

—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3년 2월 28일

나. 제안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03년 3월 18일

라. 상정일자 : 2003년 3월 21일

제7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조 훈 영

나.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별 종류별·직급별 정원과 불부합한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이 2003. 8. 31까지 행정자치부장관과 연장협의(2003. 2.28 → 2003. 8. 31)
- 산업단지내 환경관리업무가 환경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산업단지내 배출업소의 관리권한이 시·도지사에게 2002. 10. 1일자로 권한 위임된 사무중 일부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함에 따른 추가인력 보강을 위한 정원 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임.

다. 주요내용

- 기간연장 : 2003. 2. 28 ⇒ 2003. 8. 31(6개월)
- 직렬·직급별 초과현원 : 66명 ⇒ 43명
 - 부칙 제3조 2항 개정(제497호)

- 정원조정(+1) : 1,331명 → 1,332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309명 → 1,310명

라. 참고사항

- 대통령령 제16550호 기구정원규정중개정령 부칙 제3조 제3항 (초과현원에 관한 경과조치)
- 정원불부합현원관련 지방자치단체정원관리지침('03.2.14 경상북도)
- 산업단지내 환경관리업무 재위임에 따른 인력추가 보장('03.2.27경상북도)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이 춘 배

-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제16550호로 기구정원규정중 개정령 부칙 제3조3항의 규정에의거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이 2003. 2. 28 도래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기간연장 협의로 2003. 8. 31까지 6개월 연장하는 개정 조례안임.
- 또한, 2003. 8. 31까지 기간연장 협의에 따른 직렬·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불부합 현원 43명을 따로 있는 것으로 명시하는 조례 개정안임.
- 산업단지내 환경관리업무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등 3개 법령의 개정으로 산업단지내 배출업소의 관리권한 중 일부권한을 시장에게 재위임함에 따른 추가인력 1명 보장에 관한 조례 개정안임.
- 상위법령이나 타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자치단체별 종류별·직급별 정원과 불부합한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이 2003. 8. 31까지 행정자치부장관과 기한 연장협의(2003. 2. 28 → 2003. 8. 31).
- 산업단지내 환경관리업무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등 3개 법령의 개정으로 산업단지내 배출업소의 관리권한이 시·도지사에게 '02. 10. 1일자로 권한 위임된 사무중 일부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함에 따른 추가인력 보강

□ 주요 내용

- 기한연장 : 2003. 2. 28 ⇒ 2003. 8. 31(6개월)
- 직렬·직급별 초과현원 66명 ⇒ 43명
 - 부칙 제3조 2항 개정(제497호)
- 정원조정 (+1) : 1,331명 → 1,332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309명 → 1,310명

□ 참고 사항

- 도 행정 12200-10258(2003. 2. 14) 정원불부합현원관련 지방자치단체 정현원 관리지침통보
- 도 행정 12200-10317(2003. 2. 27) 산업단지내 환경관리업무 재위임에 따른 인력 추가 보강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중 “1,331”을 “1,332”로 하고, 동조 제1호중 집행기관의 정원 “1,309”를 “1,310”으로 한다

조례 제497호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3조 제2항중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66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를 “직렬·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3명은 2003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 제497호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3조제2항은 2003. 3. 1부터 적용한다

신 구조문대조표

현행	개정안
제2조 (정원의 총수)구미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1,331명</u> 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u>1,309명</u>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2명	제2조(정원의 총수) ----- ----- <u>1,332</u> ----- ----- 1 ----- : <u>1,310</u> - 2 (현행 제2호와 같음)
조례제497호 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생략) ②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66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현행 제1항과 같음) ② ----- 직렬·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u>43명은 2003년 8월 31일까지</u> --- -----